

[별표 1] <개정 2008.5.9>

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및 자체검사원·검사보조원의 수(제17조의2관련)

1.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

도축장에서 검사관이 1일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관한 기준 업무량은 당해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가. 1인이 근무하는 경우 : 소 30두 이하, 돼지 300두 이하, 닭 2만수 이하

나. 2인이 근무하는 경우 : 소 60두 이하, 돼지 600두 이하, 닭 4만수 이하

다. 3인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: 3인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 90두 이하, 돼지 900두 이하, 닭 6만수 이하로 하되, 검사관 1인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, 돼지 600두, 닭 4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.

라. 동일작업장에서 소·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에는 소 1두를 돼지 10두로 환산한다.

2.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의 수

구분	가축별	일일 도축두수	자체검사원의 수	검사보조원의 수
도축장	소	1두~30두	—	1인 이상
		31두~60두	—	2인 이상
		61두 이상	—	3인 이상
	돼지	1두~300두	—	1인 이상
		301두~700두		2인 이상
		701두 이상		3인 이상
	닭	1수~20,000수	1인 이상	1인 이상
		20,001~40,000수	2인 이상	2인 이상
		40,001수 이상	3인 이상	3인 이상
집유장		집유농가수	500호당 1인 이상	100호당 1인 이상

비 고

1. 도축장의 일일 도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말은 소의 기준을, 양(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)과 사슴은 돼지의 기준을, 그 밖의 가금류는 닭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.
2. 일일 도축두수(집유농가수)의 산정은 전년도 연간 실제 도축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두수(집유농가수)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일 도축두수(집유농가수)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당해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물량 등을 감안하여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의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3. 작업장의 영업자는 자체검사원 또는 검사보조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자체검사원 또는 검사보조원을 충원하여야 한다. 다만, 집유업의 경우 자체검사원의 충원은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.